『인권연구』 9(1): 69-127.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9(1): 69-12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6.9.1.69

〔일반논문〕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에 관한 고찰*

정 은 주**

한글초록

올해 40주년을 맞은 발전권 선언에 따르면, 발전은 “모든 인간과 인민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 역사적으로 발전권 논의는 1960년대 국제질서 재편을 모색하던 제3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노스를 상대로 발전권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된 배경이 있다. 오늘날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개별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유엔 총회 결의의 형태로 남은 발전권 선언의 성격은 권리의 효과적 이행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다.

본 고는 발전권이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의 특성임을 고려하여,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조약 전반에서 규정된 국제협력 의무를 바탕으로 발전권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논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인권법 체계에서 규정된 국제협력 의무는 국가 중심의 협력과 행위 의무(obligation of conducts) 위주로 이행되고 있어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로 작용한다. 더욱이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에 여전히 소극적이고, 최근 국익중심외교와 다자협력질서의 약화로 국제협력은 더욱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제협력 의무가 국제규범상 국가 중심의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의무(Global Obligation)로 발전하고 있다는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의무의 방향을 탐색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2025)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장 /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ISSN 2635-4632

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글로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구축을 지향하며,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위기, 글로벌 빈곤 등 초국경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보완 과제들을 제시한다. 먼저, 국가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를 포괄한 글로벌 의무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 인권책임에 관한 논의에서도 '인과관계(causation)'는 국제협력 의무의 제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CBDR)'과 같이 글로벌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법 원칙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인권·무역 등 다원화된 국제체제(regime)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행위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발전권,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 공적개발원조, 글로벌 의무

목 차

Ⅰ. 서론
Ⅱ. 발전권과 국제협력
Ⅲ.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 수행의 제한 요인
Ⅳ.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의 재구상
Ⅴ. 결론

Ⅰ. 서론

전 세계 불평등, 개발 격차,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2026년 기준, 약 8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 3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1]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의식주 해

[1] World Bank, "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 Poverty and Inequality

www.kci.go.kr

결을 위해 이 정도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2] 더욱이 소득 기준만으로는 존엄한 삶에 필요한 교육, 보건, 주거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핍을 설명하는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을 포착하기 어렵다. 문제는 최소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 세계 빈곤층의 현실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3]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이정표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불과 4년을 남겨 두고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4] 이 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제시하면서, 10번 목표(Goal 10)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만 아니라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나아가 전체 17개의 목표가 모든 회원국에서 고루 달성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17번 목표(Goal 17)를 설정하는 등 이전 새천년개발목표(MDGs)보다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엔 SDGs 이행경과 보고서(2024)에 따르면, SDGs의 17%만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5]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5억 9천만 명이 여전히 극빈층으로 살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취 가능한 수준'과 '실제 수준 사이'에 큰 격차로 인한 구

Platform, https://pip.worldbank.org/home (검색일: 2026년 5월 10일).

2) Olivier De Schutter, *The Poverty of Growth* (London: Pluto Press, 2024), p. 24.

3) Thomas Pogge and Mitu Sengupta,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Drafted: Nice Idea, Poor Execution,"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24, no. 3 (2015), pp. 579-580.

4) UN General Assembly(이하, 'UNG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21 October 2015).

5)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28 June 2024).

www.kci.go.kr

조적 폭력의 결과이자 인권 침해이다.[6]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반세기가 넘도록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1960년대 냉전 구도에서, 식민 지배를 벗어난 아프리카 신생국들은 불공평한 국제경제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며 발전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 한편에,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간 구조적 긴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여러 차례 규범 제정의 시도 끝에, 1986년 유엔 총회에서 발전권 선언(UN Declaration on Right to Development)이 채택된다. 선언은 발전을 인권(Development as Human Rights)으로 정의하면서, 무분별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과 그로 인한 불평등이 개인과 집단, 빈곤한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였다. 발전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채택한다.[7]

기존 발전권에 대한 국내 학계의 논의는 발전권 선언의 채택으로 발전권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지위를 획득한 역사적 과정과 개념 및 의의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전권의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성에 문제 제기하면서, 유엔의 노력을 소개하고 발전권과 인권과의 관계, 발전권의 주체, 국제법적 효력 등 발전권의 재개념화를 광범위하게 시도하였다.[8] 구속력 있는 조약 등 국제규범 제정의 중요성과 국내 법·제도로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9] 발전권의 내용을 수용하여 인권과 발전, 빈곤 문제를 조화시킨

6) 조효제. 『인권의 지평』. 후마니타스. 2016. 87쪽.

7) UN Human Rights Council(이하, 'UNHRC'), *Inequality, social protection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Study by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54/83 (4 July 2023), paras. 9 and 15.

8) 전진희, 「국제법상 발전권 개념의 재정립」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9) 김태운, "국제법상 인권으로서의 개발권," 『법학연구』 1, no. 42 (2001):

www.kci.go.kr

실천적 접근법으로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법·제도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0] 본 논문 주제와 관련된 발전권의 국제적 이행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의무 수행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논의한다.[11] 발전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발전권의 국제적 의무와 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12] 또한, 발전권이 속한 연대권이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의 의무와 공동의 의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을 밝힌 논의도 있다.[13] 이러한 선행 연구는 발전권의 개념 정의와 적용, 국제적 차원의 이행 필요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권의 국제적 의무로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과 이행 과정에서의 제한 요인, 앞으로의 진화 방향과 선결과제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날 개발, 환경, 무역 등 여러 국제규범에서 발전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14] 일례로 구속력 있는 규범 수립 과정에서 발전권

105-120; 장복희, "국제법상 개발권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법』 no. 3 (2000): 95-137.

10) 유해정, 「인권과 발전: HRBA 모델의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민경일,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관점에서 본 UN 발전권 선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11) 장복희, "국제법상 개발권의 범위와 이행," 『법학논고』 no. 38 (2012): 433-454.

12) 백범석·박진아, "발전, 인권 그리고 국제법 - 발전권의 국제적 논의 전개와 실현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5, no. 2 (2020): 59-92.

13) 이주영,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연구』 10, no. 2 (2017): 33-57.

14) Karin Arts and Tamo Atabongawu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New Momentum Thirty Years Down the Line?,"

www.kci.go.kr

이행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 개념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지속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고는 발전권 선언 채택 이후 규범의 진전과 실질적 이행이 더딘 현실을 고려하여, 발전권이 글로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전 지구적 성격을 지니는 권리라는 점에 주목한다.[15] 이를 토대로 발전권이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법이 확인한 국제협력 의무를 기반으로 이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나아가, 기존의 국제협력 수행 방식의 한계를 분석하여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재구상하고, 보완 과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발전권과 국제협력

1. 발전권의 정의

유엔 발전권 선언에 따르면 발전은, "전체 인구와 모든 개인의 웰빙(well-being)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 정의된다.[16] 이에 따라 모든 인간과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63, no. 3 (2016), p. 234.

15) 조효제, 앞의 책, 101쪽.

16) 2000년대 들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중심 패러다임이 인권 침해를 수반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Development'를 '발전'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확대되었다. Amartya Sen의 저서 *Development as Freedom*도 국내에서『자유로서의 발전』으로 번역되었으며, 'Right to Development' 역시 발전권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Development라는 용어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등에서처럼 '개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권적 접근이 함의되는 맥락에서는 '발전'으로, 그 외 일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는 '개발'로 표기하였다.

www.kci.go.kr

인민(peoples)은 개발 과정에 권리 주체로 참여하고,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권리를 지닌다. 발전권은 1986년 유엔 총회 결의안 형태의 선언이 현재까지 최종적 규범으로 남아 있어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권 선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만이 자국의 법률로 체계화한 상황이다.[17] Philip Alston은 '개발'과 '인권'이라는 두 의제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문제를 다루며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별개의 영역처럼 논의되는 현실을 "한밤중에 서로 지나치는 배들(Ships Passing in the Night)"이란 표현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18]

이러한 점은 발전권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한계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서의 성격에서처럼 발전권 선언은 권고적 성격의 "should"를 열여덟 차례 사용하는 데 반해, 강제성을 갖는 "shall"은 세 차례만 언급된다.[19] 그러나 발전권 선언에서 언급된 원

17) 말라위,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헌법에 발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가령, 말라위 헌법 제30조는 모든 개인과 집단이 발전권을 지니며, 여성, 아동 및 장애인은 이 권리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는 헌법에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발전권 실현 및 이행에 기여하는 다른 권리들을 인정하거나, 국가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Development, *Reinvigorat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 vision for the future*, A/HRC/54/27 (04 August 2023), para. 27 참조.

18) Philip Alston,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27 (2005).

19) "shall"이 쓰인 제5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등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전쟁의 위협 등 대대적인 반인류적인 침해를 단호하게 조치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또 다른 "shall"이 쓰인 조항은 제8조로 이 또한 국가의 식량, 보건, 주거, 고용 등에 대한 접근에서의 기회 평등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본 선언의 어떠한 내용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이나 국제인권장전에

칙과 내용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오늘날 지속가능발전 체제 등 다수의 국제 문서와 결의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이 공인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지속적 합의를 토대로, 발전권은 한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위주로 주장하던 정치적 요구를 넘어서, 인권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발전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발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예를 들어 적절한 주거, 보편적 보건의료와 같은 요소들은 이미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된 권리들이기에 별도의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정치적 권리 등 여러 권리가 다층적으로 구성된 발전권을 별개의 인권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발전권을 "과정으로서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의 수행 과정은 인권 원칙과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의미있는 참여, 개발 기회의 평등, 개발의 이익 공유와 분배, 천연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개발정책과 사업은 자유권, 사회권 등 각각의 권리들을 서로 충돌시키지 않으면서, 목표하고자 하는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도모한다. 따라서 발전권은 "특정 권리에 대한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20]

발전권은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

인정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shall"이 사용된다. 그 외 국제적 차원의 의무의 성격을 담고 있는 대부분 조항에서는 "should"로 기술되어서 구속력에 차이를 두고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Arjun Sengupta,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24, no. 4 (2002), p. 847; UNGA,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RES/41/128 (4 December 1986).

www.kci.go.kr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발전권은 개인의 인권이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발전권 선언이 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개별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개발이라는 목적 하 이뤄지는 개입이 인권 침해로 나타날 때, 개인적 권리로서 발전권의 중요성은 부각 된다. 개발은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개발에 대한 참여와 혜택 공유에 평등한 접근은 개인적 차원의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21] 한편, 집단적 권리로서의 발전권은 오늘날 글로벌 빈곤, 불평등을 일으키는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인권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여, 인간 개인의 인권 실현은 더 넓은 차원의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이라는 집단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부가적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집단적 권리로서의 발전권은 인권이 지니는 개인주의적 개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인류의 관심사들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22]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제에서처럼, 발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행이 요구된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 국가는 선언 제2조 제3항에서처럼 “개발로 생겨난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웰빙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3대 의무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발전권의 존중 의무(Duty to Respect)란, 국가가 주민과 집단의 발전권을 실현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해를 끼치지

21) Koen De Feyter, “The Holder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d. Carol Chi Ngang (Brill, 2025), pp. 59-62.

22) UNHRC,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matic study by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57/40 (12 July 2024), paras. 6 and 14.

www.kci.go.kr

않는 등 직간접적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호 의무(Duty to Protect)의 일환으로 기업 등 제3자의 개입으로부터 주민과 집단의 발전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실현 의무(Duty to Fulfill)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23]

발전권 선언에서는 여러 조항에서 국가의 국제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제1항은 국가가 "발전권 실현에 유리한 국내적·국제적 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국 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역할을 요청한다. 나아가, 발전권 선언 제3조 제3항과 같이 개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 국가는 "서로 협력할 의무(du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를 부담한다.[24] 제4조 제2항에서는 "개도국의 개발 노력의 보완책으로써, 적절한 시설 등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제6조에서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고, 장려하며,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선언의 마지막 조항인 제10조에서도 "발전권의 완전한 향유와 점진적 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기타 제도의 수립과 실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발전권 선언에서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서로 협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을 토대로 현재 논의 중인 발전권 규약 초안

23) Olivier De Schutt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rd ed. (Cambridge Univ. Press, 2019), p. 292;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CESCR'),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Covenant), E/C.12/2002/11 (20 January 2003), paras. 17-24.

24) 스티븐 마크스, "개발권 이행의 의무", 보르 안드레아센·스티븐 마크스 편저,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김신·양영미 옮김, 후마니타스, 2010, 120쪽.

www.kci.go.kr

(Draft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도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25]

2. 발전권의 국제적 이행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발전권 선언은 국내적 차원의 의무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발전권은 집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각국은 발전권 실현을 위해 국내적 차원의 조치뿐 아니라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26] 따라서 국제협력[27]의 법적 기반은 발전권의 이행

---

25) UNHRC, *Draft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 to Development: Report by the Chair-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Zamir Akram (Pakistan)*, A/HRC/54/50 (July 2023), art. 13.

26) Amal Jawad and Bonny Ibhawoh, "Self-Determination and the Collective Rights of Peoples in the Right to Development Agenda,"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d. Carol Chi Ngang (Brill, 2025), pp. 41-44.

27) 국제법에서 "협력(cooperation)"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지만, 어떠한 문서에서도 협력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는다. Rüdiger Wolfrum에 따르면, 협력은 국제 조약이나 국제기구의 결의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다. 그나마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70)'이 협력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대표적 규범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협력이란, 법적 체제(legal regime) 내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국가 간 자발적으로 조정된 행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은 국가의 단독 활동으로는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경제, 개발, 평화와 안보, 인권 등 국제관계의 근간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Rüdiger Wolfrum, "Co-operation, International Law of,"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www.kci.go.kr

강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발전권 선언에 따르면, 이 권리가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데에는 유엔 헌장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유엔 헌장에 기반하여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존중할 것”을 규정한다.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 인권 존중의 증진 및 장려,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적 진보 촉진이라는 유엔의 설립 목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28] 이를 알 수 있듯이, 유엔 헌장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추구할 것을 선언한다.[29]

유엔 헌장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적 국제문제,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을 도모하는데 국제협력이 요청된다. 이 조항은 국제협력 그 자체로 목적을 담은 조항이면서, 동시에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하는 국제 평화와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30] 다만 제1조 제3항이 규정한 국제협력의 목적은 ‘유엔’이라는 조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원국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헌장 제55조가 제1조 제3항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제55조[31]는 국

Public International Law, edited by Rüdiger Wolfr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28) John Linarelli, Margot E. Salomon, and M. Sornarajah, *The Misery of International Law: Confrontations with Injustice in the Global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9) UN,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4 October 1945)*, preamble.

30) Tahmina Karimova,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London: Routledge, 2016).

31)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웰빙(well-being)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

www.kci.go.kr

가 간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안정과 인류의 웰빙에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생활수준과 완전고용 및 경제사회적 진보와 발전 조건”, “경제·사회·보건 분야에서의 국제문제 해결 및 문화·교육 관련 국제협력”,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촉진할 것을 규정한다. 이처럼 제55조는 제1조 제3항에서 명시된 유엔의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구체화하면서, 개발, 인권, 평화라는 3대 의제가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웰빙의 조건(제55조)”이라는 맥락에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32]

아울러 국제협력이 강조되는 제56조[33]는, 모든 회원국이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56조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제55조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을 하는 조항으로, 인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협력 의무가 요청될 수 있다는 근거로 논의된다.[34] 이처럼 유엔이 경제·사회·문화적 문제와 인권 영역에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고 인정한 점은,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인간의 권리가 개별 국가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

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32) Karimova, 앞의 책, p. 127.

33)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4) UNGA,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39/504/ Add.l (October 1984), para. 129 quoted in Karimova, 앞의 책, p. 128.

www.kci.go.kr

제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35]

국제협력은 유엔 헌장 외에도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국제환경법 등 여러 국제법 영역에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국제인권법에서 국제협력 의무는 중요한 원리로 포함되어 있다.[36] 대표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은 제2조 제1항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사회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에 대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 국제협력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의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일차적 의무부담자인 당사국이 사회권을 실현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타 국가가 사회권을 실현할 국제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주로 개도국)의 의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권위원회는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이란 표현이 의무 불이행의 근거로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며, 식량, 의료 등 최소핵심의무(minimum core obligations)는 즉각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7]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다른 인권조약과 달리 제32조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독자적으로 배치하고, 국제개발 프로그램에서 장

---

35) Sigrun Skogly, "Glob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 ed. Gibney et al, *The Routledge Handbook on Extrater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s* (London: Routledge, 2022), p. 25.

36) Karimova, 앞의 책, p. 122; Fons Coomans, "The Extraterritorial Scope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11, no. 1 (2011), p. 16.

37) CESCR, *General Comment No.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2, Para. 1, of the Covenant), E/1991/23 (14 December 1990), para. 2, 9, 10, 11 and 14.

www.kci.go.kr

애를 포괄하는 등 타 국가가 협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국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여러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서 국제협력의 수행 필요성과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2조에서 규정한 접근성에 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보조 공학기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입 등 기술협력이 요청되는 부문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장애인단체(OPDs) 등 국가를 넘어 여러 주체 간 협력이 요구된다.[38] SDGs 의제 이행 과정에서도 모든 활동이 장애 포괄적이고,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인권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39]

한편, 국제협력의 수행은 국가의 영토 또는 관할권 내에서만 취하는 조치가 아니라, 관할권 외 타 국가에서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 의무가 보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외 의무(ETOs)의 성격을 지닌다.[40] 이러한 사항은 사회권위원회의 식량권(일반논평 제12호, 1999), 건강권(일반논평 제14호, 2000), 물에 대한 권리(일반논평 제15호, 2002) 등 여러 일반논평에서 확인된다.[41] 이들 논평은 공통적

---

38)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General Comment No. 2: Article 9 - Accessibility*, CRPD/C/GC/2 (11 April 2014), paras. 30 and 47.

39) CRPD, *General Comment No. 6: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CRPD/C/GC/6 (26 April 2018), para. 72.

40) UNHRC, *Report of the high-level task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on its sixth session by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High-level task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15/WG.2/TF/2/Add.2 (14-22 January 2010), para. 8.

41) Wouter Vandenhol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RC: Is There a Legal Obligation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7 (2009), p. 52.

www.kci.go.kr

으로 국제인권조약 상 확인된 국제협력 의무가 국가의 관할권 외에서 존중·보호·실현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해석해 왔다. 국제법 학자들 간 협의를 통해 수립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국가의 역외 의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원칙(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마스트리히트 원칙')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한다. 마스트리히트 원칙 8(a)에 따르면, 역외 의무는 "국가의 영토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그 국가의 영토 밖에서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관련된 의무들"로 정의된다.[42] 이와 같은 해석은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명시된 국제협력 의무를 근거로 발생한다.[43] 물론 마스트리히트 원칙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나,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조약, 그 해설 등을 법원으로 하면서 역외 의무의 법적 성격을 평가한 전문가의 의견이 집약된 문서이기에, 이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역외 의무에 관한 정의는 더욱 명확해졌다.[44] 그러나 현실은 인권 실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이행 중요성을 확인함에도, 규약의 해석을 두고 국가 간 입장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발전권이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한 국제협력 의무를 바탕으로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45]

---

42) ETO Consortium, 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ptember 28, 2011), paras. 29-32.

43) Olivier De Schutter et al., "Commentary to the 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34 (2012), p. 1090.

44) ETO Consortium, 앞의 글, pp. 26-27.

45) Olivier De Schutter, "Chapter 12: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Enabling Poverty-Reduction in Domestic Legal Orders by a Reformed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ed. Andenas, Perelman and

www.kci.go.kr

III.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 수행의 제한 요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발전권은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되는 전 지구적 성격을 지니는 권리이다. 발전권 선언이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의 국제협력을 의무로 요청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발전권의 국제적 이행은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협력 의무를 토대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위기와 이에 대처해 온 국제사회의 국제협력 수행 방식은 오랜 기간 협력적 주권(cooperative sovereignty)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발전권의 논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46]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국가 중심의 행위 의무 수행의 한계

국제협력 의무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제공과 같이 행위 의무(obligation of conducts) 중심으로 이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는 결과의 달성 여부보다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제협력을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협력의 책임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유용하지만, 결국에는 불평등과 같이 구조적 부정의와 같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국제협력 의무의 절차적 노력만을 강조하는 한, 발전권이 지향하는 구조적 변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GNI의 0.7%를 ODA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공약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

Scharling (Cham: Springer, 2021), p. 317.

46) Tefera Addis, *The Duty to Cooperate as an Instrument of Operationalizing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case of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in the Lowlands of Ethiopia* (Law & Development Research Group/University of Antwerp Faculty of Law, May 2022).

www.kci.go.kr

력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이행 강제력이 없다. ODA는 국제협력의 주요한 방식으로 반복적인 불이행은 개별적·집단적 협력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일회적 또는 미이행만으로 국제위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47]

이러한 경향은 국제협력 의무의 한계를 재정 문제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지원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순응적 인식을 고착시킨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국제협력 의무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제한된 자원과 그에 따른 정치적 우선순위가 얽힌 문제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공여국이 수원국에 얼마나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로 집중되었고, 이는 국제협력 의무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Wouter Vandenhole은 국제협력 의무가 ODA 제공 위주로만 이해되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발전권의 국제협력 의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국제사회가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ODA 수행 중심으로 국제협력 의무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하였다.[48] 기존 국제협력 의무의 수행 방식은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수립이나, 규범의 글로벌 이행 책임을 규명하는 등 결과의 의무(obligation of results)를 포괄하지 못한다.[49]

흔히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행동은, 의무부담자인 국가가 자체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청되므로, "2차적 또는

---

47) UNHRC EMRTD, "Operationaliz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HRC/EMRTD/10/CRP.1 (16 April 2024), para. 53.

48) Wouter Vandenhole, "Towards a Division of Labou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trater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Human Rights*, ed. Markus Kaltenborn et al. (Cham: Springer, 2019), p. 24.

49) Elena Pribytkova, "What Global Human Rights Obligations Do We Have?,"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 no. 2 (2020a), pp. 388-393.

www.kci.go.kr

보조적 의무(secondary or subsidiary duty)"로 해석되었다.[50] 이러한 인식은 국제협력 의무를 보조적 수단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국제협력 의무가 보조적인 의무라고 해서 부차적인 사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사회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타 국가들의 국제협력이 "보완적 의무(complementary obligation)"로 기능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51] 타 국가의 국제협력으로 인해 자국의 인권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52] 그러나 발전권 국제규약 초안 제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논쟁이 보여주듯이, 국제협력 의무를 단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협력 의무가 국가 중심의 관계로 이뤄져서 발전권을 포함한 글로벌 인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른바, '수평적 협력 방식'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보다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개발의 효과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협력국의 부패나 자금 오용 등 거버넌스가 취약할 경우, 자원이 빈곤한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수직적 협력의 실패) 결함이 발생한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주

50) Margot E. Salomon, "Deprivation, Causation and the La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lobal Justice, State Duties: The Extraterritorial Scop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Law*, ed. Langford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278-279.

51) Wouter Vandenhol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RC: Is There a a Legal Obligation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7 (2009), p. 26; Margot E. Salomon, "How to keep promises: Making sense of the duty among multiple states to fulfil socio-economic rights in the world," *SHARES Research Paper* 53 (2014), p. 4.

52) Vandenhole, 위의 글(2019), p. 25.

www.kci.go.kr

로 수원국)의 주민은 타 국가(주로 선진국)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고, 수원국 주민의 국적 국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53]

2. 발전권 규범 논의에서 글로벌 노스의 소극적 태도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발전권의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발전권 이행의 주요 제한 요인이다. 미국은 발전권이 "개별 인권보다 개발을 우선시하는 유해한 서사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발전권이 어떠한 국제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편적·개인적 권리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발전권이 "개인을 보호하기보다 국가를 보호하는 권리"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국가는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 주체이므로, 발전권 개념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발전권 선언 채택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54]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도국 개발정책과 협력 관계에서 인권기반접근(HRBA)을 채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발전권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제정하는 데에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발전권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발전권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발전시키기에 여전히 많은 국가 간 의견 대립과 미해결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든다.[55] 이처럼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

53) Pribytkova, 앞의 글(2020a), pp. 410-412.

54)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Explanation of Vote on a Third Committee Resolu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1 November 2024) https://usun.usmission.gov/explanation-of-vote-on-a-third-committee-resolution-on-the-right-to-development/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55) Delegations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www.kci.go.kr

여전히 발전권의 국제규범 제정에 소극적이다. 심지어 미국은 유엔 총회가 채택하고, 환경, 지속가능발전 등 관련 국제규범에서 지속 확인되고 있는 발전권의 개념 자체를 여전히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56]

이러한 입장 차는 사회권 규약 제정 당시의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국제협력이 도덕적 선의에 기초하기에 법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학계에서도 사회권 규약의 초안 작성자들이 타 국가의 협력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였다. Philip Alston과 Gerard Quinn은 초안 작성자들이 특정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의 존재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Fons Coomans와 Sigrun Skogly는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하였다.[57] 한편, 2008년에 채택된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제정 협상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사회권 규약에 명시된 "국제협력과 지원(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이 도덕적 의무일 수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니며, 따라서 당사국이 사회권 실현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국제협력이 법

"EU Explanation of Vote − UN General Assembly 3rd Committee: Right to Development." (11 November 2024)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n-new-york/eu-explanation-vote-%E2%80%93-un-general-assembly-3rd-committee-right-development_en?s=63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56) Flavia Zorzi Giustiniani, "Chapter 7: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in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International Law in Disaster Scenarios: Applicable Rules and Principles* (Springer, 2021), p. 109.

57) Philip Alston and Gerard Quinn, "The Nature and Scop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9, no. 2 (1987), p. 191 quoted in Vandenhole, 앞의 글(2009), p. 51.

www.kci.go.kr

적 의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면서, 오늘날 사회권 실현은 국가 간 공동책임의 문제이자 국제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58]

오늘날 대다수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 위기와 같은 글로벌 성격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형태는 국가 간 자발적인 공약(voluntary commitments) 정도로 제정되었다. 단적인 예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라 할 수 있는 SDGs 이행 메커니즘이 구속력 있는 형태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SDGs 목표(goal)의 달성 여부를 각 회원국의 역할과 재량으로 남겨 둔 채, ODA(17.2), 금융 재원(17.3), 부채 탕감(17.4), 친환경기술의 보급(17.7) 등 타 목표의 이행 수단을 또 다른 하나의 목표(Goal 17)로 설정하였다.[59] 이러한 배경에는 주요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글로벌 행동은 의무라기보다 도덕적, 철학적 이념에 더 가깝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자신들을 구속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낸 데에 있다.[60]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국제적 합의에 따른 재정적·정책적 공약 이행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현실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자국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ODA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부채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체계의 구축을 저해한다. 이처럼 글로벌 노스의 미온적 태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책무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발전을 진전시키지 못

58) Coomans, 앞의 글, p. 17.

59) Thomas Pogge and Mitu Sengupta, “Asses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32, no. 2 (2016), pp. 93-94 quoted in Elena Pribytkova, “Global Oblig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rmoniz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1 (2020b), pp. 1075, 1101-1103.

60) Pribytkova, 앞의 글(2020a), pp. 416-420.

www.kci.go.kr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61]

3. 다자협력 질서의 쇠퇴와 국익중심외교 부상

최근 국가들이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 국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구축해 온 다자협력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2024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ODA 공여 규모가 2023년 대비 7.1% 실질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62]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는 원조 전담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고, 일부 기능만을 부처로 통합하였다.[63] 트럼프 정부 이전에도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RI)에 대응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존 인도주의, 보건 등에 지원된 ODA를 활용하였다. 중국은 개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차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금리의 대출 상환 실패 시 항만, 공항, 에너지 시설, 광산 등 고부가가치 자산의 운영권을 갖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라오스 국영 송전 전력회사(EDLT)의 지분 90%가 중국 남방전력망공사로 넘어갔고, 이는 23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55억 달러의 채무를 일부 감당하기 위한 매

---

61) Wilfred Mamah, *Traps and Tools: A Contextual Critiqu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PhD diss., University of Westminster, 2013) quoted in Jawad and Ibhawoh, 앞의 글, p. 25.

62) OECD, “International aid falls in 2024 for first time in six years, says OECD,” 16 April 2025,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5/04/official-development-assistance-2024-figures.html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63)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Presidential Document, 90 FR 8619, January 30 20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30/2025-02091/reevaluating-and-realigning-united-states-foreign-aid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www.kci.go.kr

각이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략으로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에너지 안보, 경제적 이점 확보 등을 위해 ODA를 병행하고 있다. “가치외교와 국익 간 균형을 추구”를 표방한다고 하나, 글로벌 연대관점에서 추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64]

국익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ODA 예산 축소, 인도적 지원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규범에 기초한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주의적 외교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효율성과 국제규범 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쇠퇴는, 이른바 “노력하여 발전 역량을 갖추게 된” 국가와 민간 부문에 부당한 대우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을 시정할 책임이 해당 국가에 있으며, 국제사회 전체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시기에 국제원조가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고, 결국 자국의 빈곤층에게 돌아갈 지원을 뺏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지어 국제협력에 대한 의무 부여는 국가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의 핵심 원칙인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과도 위배 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국제사회 정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65]

---

64) 김보경,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3, no. 4 (2021): 1-28; Mark Furness, “‘Climate Migration’ as a Political Challenge: Time to Take Stock of the Actors and Activities,” *The Current Column,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 (January 27, 2025), p. 1.

65) Pribytkova, 앞의 글(2020a), pp. 404-421.

www.kci.go.kr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의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민의 이익을 내세워 국제적 책임을 축소하고, 주권을 명분으로 보편 규범을 약화시키는 정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국익 중심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 반-다자주의와 결합되기 쉽다. 더욱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포퓰리즘적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66]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면서, 국제법 학계에서는 포퓰리즘(populism) 현상과 국제법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이는 국제규범이 논의되는 국제기구의 장 내에서 포퓰리즘 세력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법 체계가 작금의 현실에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비판적 논의 등을 주제로 한다. Anthony Pahnke는 초국적 포퓰리즘 연합 세력이 국제기구, 유엔 인권 포럼의 장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과거에는 포퓰리즘 세력이 국제법 학계나 국제기구와는 거리를 두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ve Darian-Smith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학 내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학생운동 탄압사례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전 지구적 공격과도 맞닿아 있는 현상이다. 그녀는 이러한 사례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 국제적 법적 보호 장치의 단편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학 당국이 글로벌 기업 등과 연계되어 있을 때 인권 보호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은 국제법의 개인주의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집단적·연대적 차원의 국제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이처럼 포퓰리즘은 국제규범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법의 기존 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67]

---

66) UNGA, *Implementation and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59/36 (16 April 2025), para. 57.

67) Richard Joyce, James Martel, and Sundhya Pahuja, “International Law and the Challenge of Populism,” *Lond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23

www.kci.go.kr

오늘날 주요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제에서 국익 중심의 전략으로 선회하는 현상이 점차 글로벌 추세(global trend)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평등 문제는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불공정한 국제질서, 무역 및 투자 정책, 조세회피와 자본도피와 같은 복합적·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68]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글로벌 노스의 역사적 배경, 오늘날 상호의존적인 국제분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요청된다.

IV.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의 재구상

앞서 살펴본 대로 기존의 국제협력 수행 방식은 국제적 지원과 같은 행위 의무(obligation of conducts)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글로벌 노스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와 다자협력의 위기로, 발전권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엔 헌장과 사회권 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제협력 의무의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빈곤, 불평등과 같이 발전권의 향유를 저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lex ferenda)과 그 보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1. 글로벌 공동 대응으로의 협력 의무 강화

발전권의 국제적 이행은 개별 국가 간 협력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global collective action)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

September 2025), pp. 1-4.

68) 토마스 피케티, 『평등의 짧은 역사』, 전미연 옮김, 도서출판 그러나, 2021.

www.kci.go.kr

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9]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제협력 의무가 국가 중심의 협력을 넘어 '글로벌 의무(Global Obligation)'로 확대되고 있다는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의무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Margot E. Salomon은 최근 법리와 학설들이 글로벌 의무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국제사회가 글로벌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제사회의 원조 및 협력 흐름에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70] Sigrun Skogly는 국가의 집단적·법적 의무(collective legal obligations)로서 글로벌 의무가 유엔 헌장에 기반하여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 행동의 수행에 관한 의무를 논한다. 또한, 이러한 집단적 의무를 규명하는 데, 인과관계(causation)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Sigrun Skogly는 마스트리히트 원칙도 글로벌 의무 위반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regime)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명확히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점에서 글로벌 의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71]

Elena Pribytkova는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가 기후위기 등 당면 문제들에 대한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바라본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보편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세계주의자의 관점(cosmopolitanism)에서 글로벌 제도 구축과 공동 행동에 관한 의무가 형성 중임을 논한다. Elena Pribytkova가 보기에, 오늘날 국제협력은 국가 중심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우호적인 환경과 규범 질서를 구축

69) Salomon, 앞의 글(2012), p. 261.

70) 마고트 살로몬, "지구적 정의와 국제 인권 의무", 보르 안드레아센, 스티븐 마크스 엮음,『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김신·양영미 번역, 후마니타스, 2010; Salomon(2012) 앞의 글.

71) Sigrun Skogly, 앞의 글.

www.kci.go.kr

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행동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윤리적 의무를 넘어 법적 성격(legal character)을 지닌다.[72]

상기 학자들의 논의는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에 관한 글로벌 의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찍이 알마아타 선언(Alma Ata Declaration, 1978)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건강권의 격차와 한 국가 내에서의 건강 불평등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Erga Omnes)가 되고 있다”는 진취적 해석을 하였다.[73] 마스트리히트 원칙도 글로벌 의무를 포착하고 있는데, 원칙8(b)에서 역외 의무가 “글로벌 성격의 인권 의무(human rights obligations of a global character)”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히 원칙29에 따르면, “양자 및 다자 무역, 투자, 조세, 금융, 환경보호, 개발협력은 국제협력을 통해 사회권의 보편적 실현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서처럼, 오늘날까지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주민들이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은 “모든 국가의 공통 문제(common concern to all countries)”로 바라봐야 한다.[74]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글로벌 의무는 발전권 실현의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 아래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의무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를 국내적 차원, 역외적 차원, 글로벌 차원으로 구분할 경우, 글로벌 의무는 개별 국가가 특정 국가 또는 개인에 미치는 역외적 영향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역외적 의무와 달리,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관심사(common concern) 또는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에 관한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

---

72) Elena Pribytkova, “Are there global obligations to assist in the realization of socio-economic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54 (2022), pp. 397-426; Pribytkova, 앞의 글(2020a), pp. 399-400.

73)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of the Covenant)*, E/C.12/2000/4 (11 August 2000), para. 38.

74) Salomon, 앞의 글(2014), pp. 5-6.

www.kci.go.kr

는 데 초점을 둔다는 특징을 가진다.[75]

이를 위해 글로벌 의무를 이행하는 1차 의무 주체로서의 국가는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먼저, 국가는 발전권을 실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장(forum)을 구축하고, 유엔 헌장의 정신에 기초하여 신의에 따라 협상하고 논의해야 한다. 오늘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질서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국제사회는 다자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은 극빈(extreme poverty), 외채탕감 등 발전권이 요청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범 틀을 발전시켜 왔다. 나아가 분야별 전문 국제기구들의 설립을 통해, 국제사회의 전문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76]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다양한 규범 문서들도 계속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논의의 장에서 국가는 국제규범 간 불일치를 줄이고, 발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무역 등 다원화된 국제 체제(regime)를 연결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각 규범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의 위험을 줄여나가면서, 잠재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전권 선언이 지향한 목표에서처럼 발전권 실현을 방해하는 불균형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사회가 공동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논의의 장에서 제정된 규범은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비엔나 협약 제26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발효 중인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에 근거한다. 국가는 상대국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

75) De Schutter, 앞의 글(2021), p. 333-336.

76) De Schutter, 앞의 글(2021), p. 317.

www.kci.go.kr

고, 그 제안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응답할 의무를 진다.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적 수단을 모색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협정(조약, 지역 협정, 다자협정 등)이 발전권 실현의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선의와 협력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고 이행해야 한다.[77] 이러한 신의성실 의무는 단순한 절차적 협력의 차원을 넘어, 조약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발전권에 우호적인 국제질서의 형성과 그 글로벌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78]

다자협력 체제 내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 국제기구에서 채택되는 각종 결의, 권고, 정책문서 등이 발전권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는 회원국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정책적 견해를 밝혀야 한다.[79]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5호(2020)에서, “과학, 기술 및 국제협력의 영역에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 의사 결정이 인권실현에 기여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80] 이처럼 국제기구의 정책이 타국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다자개발은행의 차관 정책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기구의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77) Olivier De Schutter, “A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as Part of the Duty to Cooperat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which Human Rights can be Fully Realized’ - The New Frontier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n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Essays in honor of Philip Alston*, ed. Nehal Bhuta et 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 140.

78) De Schutter, 앞의 글(2021), pp. 348-352.

79) Salomon, 앞의 글(2014), p. 5.

80) CESCR, *General Comment No. 25: on article 15 - scienc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GC/25 (30 April 2020), para. 82.

www.kci.go.kr

따라서 국가는 회원국으로서 그러한 조치들이 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국제규범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국제협력 조치의 이행에 대한 국내적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이 인권과 발전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81]

최근 분쟁의 장기화와 인도적 지원의 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 간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대응이 더욱 요청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조정하는 유엔 전문기구와의 협력은 재난현장에서의 지원 중복을 막고, 보건, 식량 등 세부 분야별 조정과 효율적 개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인권규범은 인도적 위기 시 유엔 및 그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인도적 구호·재건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협약 제22조 제2항은, 당사국은 유엔, 정부간·비정부 기구 등 국제기구가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정보 추적 등 난민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에 당사국이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82]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에서도, 유엔 헌장에 따라 난민, 이재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 책임만이 아닌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한다.[83]

---

81)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para. 39; CESCR,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paras. 31-36.

82) 제22조 2항.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www.kci.go.kr

Rüdiger Wolfrum은 국제협력 의무를 “공동의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둘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목표의 달성이라는 인식은 국제법을 단순히 기존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규칙들의 집합에서 벗어나, 국제적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명을 지향하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복지국가적 이념을 국제법에 반영하며, 현행 국제사회를 국제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개발과 복리, 공해·해저·우주와 같은 공통의 국제적 공간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이용이 모든 국가의 공동 관심사가 된다. 셋째, 국제법의 주체들의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국제기구의 역할과 비중은 개별 국가보다 증대되며, 나아가 국가 간 관계에 불평등의 요소가 도입되어 현행 국제법의 형식적 평등을 보완한다.[84]

오늘날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에 주요한 연계 지점에 있는 기후위기 문제는 글로벌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역을 공유하는 모든 연안국의 자원과 같은 글로벌 환경 공공재(global environmental commons)의 관리에 있어서, 단순히 국가 간 협력을 넘어선 공동의 대응이 요청된다. 지난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밖에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국제인권법의 역외적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로 인정된다고 보았다.[85] 국제인권법 외에도 국제환경법, 관습국제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한 것을 토대

---

83) 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 11 of the Covenant)*, E/C.12/1999/5 (12 May 1999), paras. 38-39.

84) Wolfrum, 앞의 글, paras. 10-12.

85) ICJ, 앞의 글, para. 394; Markus Gehring, “When Custom Binds All States: Reflections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ICJ Climate Advisory Opinion,” Verfassungsblog, August 15, 2025, https://verfassungsblog.de/customary-law-icj-climate-advisory-opinion/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로 재판소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 특히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의무를 확인하였다. 재판소는 “국가들은 기후 시스템 및 환경의 다른 부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성실히 협력할 의무(du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ood faith)가 있으며, 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협력”으로 요구된다.[86] 나아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예방할 의무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글로벌 환경 문제(global environmental concerns)에도 적용”된다.[87]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의무가 “글로벌 문제 해결의 핵심 원칙(State co-operation is a paramount principle in solving global problems)”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의무가 국제사회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해 지는 대세적 의무(Erga Omnes)라고 판단하였다.[88] 이러한 의견이 곧 발전권에 관한 국제협력 의무 일반을 대세적 의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권이 기후위기 등 국경을 초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집단적·국제적 성격을 지니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발전권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 역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무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국제체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의무에 기초한 국제협력은 공여국이 수원국에 일방적이거나 국익을 우선시하는 위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넘어, 모든 국가가 글로벌 질서 형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89] 모든 국가가

86) ICJ, 앞의 글, para. 457.

87) ICJ, 앞의 글, para. 134.

88) ICJ, 앞의 글, paras. 140, 141, 261 and 440.

www.kci.go.kr

공동의 글로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로 협력 의무를 전환하는 것이다.[90]

2. 글로벌 공동 대응을 위한 보완 과제

가. 글로벌 의무 주체의 규명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글로벌 공동 대응 방식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무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비국가 행위자(NSAs)[91]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의무 주체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현행 국제법에서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를 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인권법의 진화적 성격(evolving na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을 고려할 때 비국가 행위자 역시 인권과 관련하여 고유의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는 논의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에 발전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모으

89) Salomon, 앞의 글(2014), pp. 34-35.

90) Jawad and Ibhawoh, 앞의 글, pp. 43-45.

91) 비국가 행위자는 국제사회의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령, 1992년부터 리우환경회의에서 공식화된 9대 이해당사자그룹(Major Groups)은 국제 기후·환경 규범 프레임워크의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여 주체로 기능해 왔다.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협약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 및 정책 형성에 기여하면서, 국제환경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체제에서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도 이해당사자그룹(Major Groups) 참여 메커니즘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United Nation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 High-Level Political Forum 2025," https://hlpf.un.org/2025/major-groups-and-other-stakeholders-mgos?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www.kci.go.kr

는 데 다중 행위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92] 이처럼 비국가 행위자가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가 중심의 국제협력을 넘어, 국제사회 공동 행동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포괄하는 "집합적 의무 주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 기업 및 비정부기구(NGO) 등 비국가 행위자와 개인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행위자(Global Actors)"로 호칭하고자 한다.

일찍이 세계인권선언은 전문(preamble)에서 권리와 자유 존중의 주체로 "모든 개인과 사회 각 조직(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들 주체가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도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할 역할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표현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도 인권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하는데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항에서도 "모든 사람(Everyone)은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Duties)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 오늘날 맥락에서는 국제사회의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함의를 지닌다. 이와 유사하게 발전권 선언의 전문에서도 개인을 "개발의 주요 참여자이자 수혜자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수립한 인간의무 및 책임 선언(Declaration of Huma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1998)은 "인권 체계에 내재된 의무와 책임의 역할 및 중요성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면서, 의무부담자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문서는 "기존의 전통적 인권 문서들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상호

92)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Development, *Reinvigorat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 vision for the future*, A/HRC/54/27 (04 August 2023), paras. 25 and 57.

www.kci.go.kr

의존적 세계 속에서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 규정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선언은 전문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인 향유와 이행은 그 권리에 내재된 의무 및 책임의 수용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늘날 글로벌 질서 하 더 주변화되는 사람들의 현실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권의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와 개인에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3]

'분배적 정의'와 '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글로벌 의무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 글로벌 행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지닌다. 이에 모든 개인과 집단이 보편적으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자원 동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양질의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국제규범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글로벌 의무의 주체가 모든 국가와 개인을 동등한 관심과 존중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국제 공동체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고, 그들의 이익과 인권 실현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의사 결정 구조에 내재한 비대칭성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94]

물론 상기 내용만으로는 글로벌 행위자의 법적 의무를 곧바로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주체는 오늘날 글로벌 정치의 담론, 규범, 제도 형성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령, 다국적 기

93) Patricia Morales, "Huma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Reinforcement of Human Rights: The Declaration of Huma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1998)," in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 Fundamental Debate,* ed. Stephan Parmentier, Hans Werdmolder, and Michael Merrig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67-82.

94) Pribytkova, 앞의 글(2020b), pp. 1075-1077.

www.kci.go.kr

업의 경우 국경을 넘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규제 방식의 이니셔티브에 가입 또는 행동강령을 수립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글로벌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 주체에 관한 다양한 규범 제정의 시도가 계속되었고, 이는 글로벌 행위자를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형성 중임을 알 수 있다.[95] 일례로 지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확인한 한편, 국가에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96] 이 원칙에서 기업의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정부 간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은 구속력 있는 조약 초안 제정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하여 UNGPs가 도출한 결론을 넘어서, 기업에 직접적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97] 지난 2024년 7월, EU 기업 지속가능

95) Pribytkova, 앞의 글(2022), pp. 430-436; Pribytkova, 앞의 글(2020a), pp. 416-417; UNHRC, A/HRC/54/50, para. 33; De Schutter, 앞의 글(2021), p. 330.

96) UNHRC,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HRC/17/31 (March 21, 2011).

97) 동 회기는 2015년 제1차 회기를 시작으로 2025년 11차 회기까지 진행되었다. 마지막 규약 초안 버전은 다음 문서와 같다: UNHRC, *Text of the updated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with the textual proposals submitted by States during the ninth session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A/HRC/55/59/Add.1 (13 February 2024).

www.kci.go.kr

성 실사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1760)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회원국들은 기업의 유럽 내외에서의 활동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단계에 있다.[98]

발전권에 관한 전문가 메커니즘(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은 2023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협력 의무(Duty to Cooperate)에 대해 논의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발전권 전문가는 비국가 행위자가 협력 의무의 수행 과정에서 △사전 통지의 의무, △협의 및 합의의 의무, △지원의 의무, △위해 시정의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사전 통지 의무'란, 비국가 행위자가 사업 활동 시 인권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타 국가 주민 등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일컫는다. 다음으로 '협의 및 합의 의무'에 있어서, 비국가 행위자는 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시 협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하여, 협의 과정에서 사용 언어를 고려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원의 의무'는 합의의 당사자인 권리보유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해를 시정할 의무'는 발전권에 부정적 영향 또는 피해가 보고되는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인권법상 민간부문의 인권 침해로 인한 권리보유자의 보호는 국가에 의무가 있으나, 발전권을 고려한 책무성 메커니즘은 다자간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기반한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형태가 바람직하다.[99]

---

98)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OJ L 2024/1760* (5 July 2024).

www.kci.go.kr

글로벌 행위자가 국제사회 공동의 인권 실현의 의무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기존 국제인권법의 접근 방식도 변화가 요청된다. 전통적으로 국제인권법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의무를 규명하는 데 있어 수평적, 수직적 틀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행위자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에서 인간 중심 질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기존 법률 이론이 전제하는 '국가 간 수평적인 관계' 또는 '국가와 개인 간 수직적 관계'의 틀을 넘어 "교차적(diagonal)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차적(diagonal) 관계란, 수평 또는 수직적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예컨대 개인과 타국 기업과의 관계와 같은 형태 안에서 글로벌 정의를 요청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역외 인권 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그간 국제법질서 모델이 활용한 수평적·수직적 규범 적용방식은 글로벌 의무 주체의 활동 범위에 맞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 자국 영토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만을 국제무대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상정하고, 개인들은 자국 정부를 통해서만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방식으로는 오늘날 글로벌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100]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적 향유를 위하여, 선언이 인정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공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갈 권리(제28조)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인류 공동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주권을 전제로 한 전통적 베스트팔렌 국제법 질서를 넘어, 인간 중심의 글로벌 질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글로벌 의무 주체의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법규범의 정립이 요구된다. 앞서 검토한 논의들은 새로운 의무 주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 부여를 둘러

99) UNHRC, *Duty to Cooperate and Non-State Actors - Thematic study by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54/84 (05 July 2023), para. 59-76.

100) Pribytkova, 앞의 글(2020a), pp. 408-409.

www.kci.go.kr

싸고 제기되는 규범적 도전과제를 드러냈다.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글로벌 행위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법적 규범 형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나. 인권책임 논의에서 인과관계(causation)의 불요

오늘날 국제질서가 상호의존적으로 구축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 및 불평등과 그로 인한 권리 박탈 문제를 개별 국가의 내부 사안으로만 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권 침해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과제라 할 수 있다.[101] 특히 인권 침해에 연루된 국가가 복수의 국가라면, 이들 국가에 책임을 배분하고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까다롭다. 이러한 현실을 "다수의 손의 역설(paradox of the many hands)"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 국가의 인권 의무 수행을 제한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그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102]

예를 들어, 발전권 침해 상황에 관여한 복수의 국가들 가운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국가를 규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국가의 의무 위반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인과관계(causation)가 작용해 왔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인권 침해를 초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causation)의 규명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점은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2001)에서도 알 수 있다. 동 초안은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행위의 국가 귀속(attribution)과 국제의무 위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때 국가의 행위와 결과 사

101) 살로몬, "지구적 정의와 국제 인권 의무", 앞의 책, 186-187쪽.

102) Christina Voigt. "Stat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Damage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7, no. 1-2 (2008), pp. 1-22 quoted in De Schutter, 앞의 글(2021), p. 333.

www.kci.go.kr

이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책임 귀속의 판단에 필수적임을 함의한다. 따라서 발전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다수 국가가 관여되어 있을 시, 개별 국가의 행위가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국제책임 논의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103]

그러나 발전권 맥락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논의하는 데 국제책임 논의는 단순히 인과관계(causation)의 규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인권 침해 사이에서의 인과관계(causation)를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권 의무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Margot E. Salomon은 인과관계(causation)의 직접성, 예측가능성, 근접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를 끼친 국가를 규명할 수 있을 때 해당 국가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causation)가 국제적 차원의 의무를 부여하는 주된 근거로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에 의하면 국제협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해 책임질만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는 적극적 의무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Salomon은 타 국가에서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권의 향유를 침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인과관계(causation)를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대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causation)를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but for(가정적 제거법)’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prima facie failure), 국제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의 일환으로 국제지원 및 협력의 특정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104]

Sigrun Skogly도 글로벌 의무가 국제사회 그 자체로 국가들의 집

103) Salomon, 앞의 글(2012), p. 333.

104) Skogly, 앞의 글, p. 34; Salomon, 앞의 글(2014), pp. 6-8.

www.kci.go.kr

단적인 의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causation)를 의무 불이행의 사유로 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Skogly는 역외 의무를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원칙도 '글로벌 의무 위반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regime)를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서 "글로벌 의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로 남아 있는데, Skogly는 국제 메커니즘 수립 시 기존과 같이 인권침해 여부를 인과관계(causation)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글로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 국가의 역사적 배경, 경제력,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 내에서 의사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causation) 아닌 방식의 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가 간 또는 다양한 행위자 간에 분배되는 책임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규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105] 국가책임 초안(2001) 제47조에서는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가 동시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위법행위가 다수 국가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공동 또는 병존적 책임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106]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손해의 인과관계(causation)는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국가책임의 성립(국제위법행위의 존재)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해당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105) Wouter Vandenhole, "De-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thinking Human Rights Law and Poverty Alleviation," *Law and Development Review* 11, no. 2 (December 2018), p. 666; Skogly, 앞의 글, pp. 33-34.

106)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art. 47.

www.kci.go.kr

과 '국제의무의 위반'이며, 손해의 발생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배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위법행위와 피해 간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적 연관(sufficiently direct and certain causal nexus)'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과관계(causation)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위반된 규범의 성격, 손해의 범위,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역시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개별 사건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07]

국제사회의 원조가 공여국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causation)와 상관없이 ODA를 제공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인권 상황의 악화를 자제할 소극적 의무와 국제적 차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애초에 인권 문제를 일으킨 개별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108] 이 점에서 '국제협력 의무의 부작위에 대한 공동책임'과 '인권 침해 행위에 따른 구제책임에서의 인과관계(causation)'는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역외 의무 차원에서 수행되는 구제책임보다 제3자인 글로벌 의무 주체에 의한 구제책임이 우선될 수 있다.[109] 이처럼 국제사회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데, 의무부담자의 작위·부작위와 권리보유자의 인권 향유 능력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causation)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 공동 대응을 위한 이행 원칙 모색

발전권의 국제적 이행은 여러 국제법 영역에서 국제규범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이행 원칙을 모색하여야 한다. 발전권

107) ICJ, 앞의 글, paras. 433-438.

108) Skogly, 앞의 글, p. 35.

109) Pribytkova, 앞의 글(2022), pp. 416-417.

www.kci.go.kr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은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국제규범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준수함으로써, 발전권의 주요 내용 및 원칙과 규범 통합적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110]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환경법, 관습국제법상 의무가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았고, 이에 국가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관습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고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인권 의무를 이행할 때도 국제환경법과 관습국제법에서의 의무를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11]

국제환경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원칙으로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CBDR)'은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CBDR 원칙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의 결과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12]에서 채택되면서, 오늘날 국제환경법 체제를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113] CBDR 원칙은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이 인류 전체에 공동으로 부과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는 국가들이 기여한 문제의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

110)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Development,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20 July 2020), p. 6.

111) ICJ, 앞의 글, para. 404. quoted in Maria Antonia Tigre, Maxim Bönnemann, and Antoine De Spiegeleir, "The ICJ'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Columbia Climate Blog, July 24, 2025. https://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25/07/24/the-icjs-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an-introduction/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112) CBDR 원칙을 공식화한 리우 선언은, 원칙3에서 발전권을 "현재와 미래 세대의 발전 및 환경적 필요를 공평하게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권리"로 보았다.

113)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한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에 근간이 되는 의제21(Agenda 21), 생물다양성협약(CBD)도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www.kci.go.kr

미이다.[114]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발전권의 국제적 차원을 해석함에 있어 국제환경법상 CBDR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면, 국가 간 구조적 불평등과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국이 부담하는 국제협력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차등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CBDR 원칙은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기후 위기에 누적적 책임이 있기에 문제 해결에 더 비용을 부담하고,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이전과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115]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CBDR 원칙을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삼아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판단한 바 있다. 국가는 "환경에 끼칠 중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해야 하고, 자국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활동이 기후 시스템 및 환경의 다른 부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면, 누적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현재의 기여도, 국가별 능력과 상황(경제·사회적 발전 등)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면서 국제사회의 불균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116]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도 개발 과정에서의 형평(Equity)을 고려한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

114) 정인섭. 『신국제법입문』(제3판). 박영사. 2019. 267쪽.

115) CBDR 원칙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전문, 제3조(원칙), 제4조(공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기후변화의 국제적 대응을 CBDR의 원칙에 따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한 기후체계를 보호하고(제3조), 국가별로 특수한 국가적, 지역적 개발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규정한다(제4조). 특히 동 협약 제4조 제7항에서는 개도국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재원 및 기술 이전에 관한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사회적 개발과 빈곤퇴치가 개도국의 1차적인 우선순위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밝히고 있다.

116) ICJ, 앞의 글, paras. 148-151.

www.kci.go.kr

이 개념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농민 등 권리 주체를 보호하며,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접근을 취한다. 기후위기에 가장 덜 영향을 끼친 개도국의 주민들이 그 결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수단이자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권에 관한 전문가 메커니즘은 "기후정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권"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태평양 도서국과 같은 기후취약 국가와 그 국가의 권리 보유자에 대한 형평성의 고려는 발전권 실현 과정에서 책임의 분배에 관한 논의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117]

현재 논의 중인 발전권에 관한 국제규약 초안은 CBDR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위한 기후재원, 기술이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국제협력 의무의 수행이 요청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118] 발전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러 국제법 영역에서 글로벌 정의를 지향하는 원칙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인권·무역 등 국제체제(regime)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동 대응을 위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 간 역사적·구조적 불균형을 일정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역량과 저발전 국가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모든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이 요청된다. 글로벌 의무의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빈곤 해결과 같은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글로벌 행위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까지를 포괄한다.

---

117) UNHRC, *Climate justice, sustainability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Thematic study by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60/95 (8 July 2025).

118) UNHRC, A/HRC/54/50, art. 13.

www.kci.go.kr

V. 결론

발전권 선언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국제협력을 의무로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유엔 헌장과 사회권 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의무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국제협력을 도덕적 선의 정도로 주장하면서, 자국의 자원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정도로 수행하였다. 국가 중심의 행위 의무(obligation of conducts) 위주의 접근은 국제협력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다. 더욱이 국제규범 논의에서 글로벌 노스의 소극적 태도와 국익 중심 외교의 부상은 다자협력 기반의 국제질서에 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과 기후위기 등 글로벌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다자협력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고는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제협력 의무의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의 발전 방향(lex ferenda)과 보완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제협력 의무가 국가 중심의 협력 체계와 자발적 공약에 머물러온 기존의 관행을 넘어 발전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즉, 글로벌 의무(Global Obligation)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인 국가는 발전권 실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장(forum)을 구축하고,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신의에 따라 협상하고 논의하며,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 논의의 장에서 국가는 발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무역 등 국제규범 간 불일치를 줄이는 데 노력하면서, 다자협력 체제에서 채택되는 각종 결과가 발전권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최근 인도적 위기 등 국제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외에도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글로벌 대응이 요청된다. 이

www.kci.go.kr

처럼 글로벌 의무 차원에서 공동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려는 인식은 글로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기후위기, 글로벌 빈곤 등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도록 한다. 발전권에 관한 국제협력 의무 일반을 대세적 의무(Erga Omnes)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협력 의무가 글로벌 문제 해결의 핵심 원칙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지는 대세적 의무(Erga Omnes)가 되었다”고 해석한 점은 이러한 주장에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국제사회가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국제협력의 의무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는 기존 논의를 넘어서, 국제기구, 기업, 비국가 행위자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글로벌 의무 주체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발전권의 국제적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인권 침해의 책임 귀속 문제에 있어서, 인과관계(causation)는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아도 된다. 역사적·누적적 특성이 있는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causation)를 국가의 의무 부과에 대한 유일하거나 주된 근거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CBDR,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서처럼 글로벌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법 원칙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환경·무역 등 다원화된 국제체제(regime)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행위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

(논문접수일: 2026. 05. 18, 논문심사일: 2026. 06. 09, 게재확정일: 2026. 06. 19)

www.kci.go.kr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김보경.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연구』13, no. 4 (2021): 1-28.

김태운. “국제법상 인권으로서의 개발권.”『법학연구』1, no. 42 (2001): 105-120.

민경일.「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관점에서 본 UN 발전권 선언」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백범석·박진아. “발전, 인권 그리고 국제법 - 발전권의 국제적 논의 전개와 실현 과제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65, no. 2 (2020): 59-92.

보르 안드레아센·스티븐 마크스 편저.『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김신·양영미 옮김. 후마니타스. 2010.

유해정.「인권과 발전: HRBA 모델의 비판적 고찰」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주영.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다문화연구』10, no. 2 (2017): 33-57.

장복희. “국제법상 개발권에 관한 연구.”『국제인권법』no. 3 (2000): 95-137.

_____. “국제법상 개발권의 범위와 이행.”『법학논고』no. 38 (2012): 433-454.

전진희.「국제법상 발전권 개념의 재정립」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정인섭.『신국제법입문』(제3판). 박영사. 2019.

조효제.『인권의 지평』. 후마니타스. 2016.

토마스 피케티.『평등의 짧은 역사』. 전미연 옮김. 도서출판 그러나. 2021.

Addis, Tefera. *The Duty to Cooperate as an Instrument of Operationalizing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Case of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in the Lowlands of Ethiopia*, 1-27. Law & Development Research Group, University of Antwerp Faculty of Law, 2022.

Alston, Philip.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www.kci.go.kr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27 (2005): 755-829.

Arts, Karin, and Tamo Atabongawu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New Momentum Thirty Years Down the Line?”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63, no. 3 (2016): 221-249.

Coomans, Fons. “The Extraterritorial Scope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11, no. 1 (2011): 1-35.

De Feyter, Koen. “The Holder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dited by Carol Chi Ngang, 58-85. Leiden: Brill, 2025.

De Schutter, Olivier, et al., “Commentary to the 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34 (2012): 1084-1169.

De Schutter, Olivier. “A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as Part of the Duty to Cooperat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Which Human Rights Can Be Fully Realized’—The New Frontier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n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Essays in Honour of Philip Alston*, edited by Nehal Bhuta et al., 140-15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_____. “Chapter 12: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Enabling Poverty-Reduction in Domestic Legal Orders by a Reformed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edited by Andenas, Perelman, and Scharling, 317-417. Cham: Springer, 2021.

_____.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_____. *The Poverty of Growth*. London: Pluto Press, 2024.

Furness, Mark. “‘Climate Migration’ as a Political Challenge: Time to Take Stock of the Actors and Activities.” *The Current Column*. German

www.kci.go.kr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 2025.

Giustiniani, Flavia Zorzi. “Chapter 7: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in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In *International Law in Disaster Scenarios: Applicable Rules and Principles*, 107-145. Cham: Springer, 2021.

Jawad, Amal, and Bonny Ibhawoh. “Self-Determination and the Collective Rights of Peoples in the Right to Development Agenda.”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dited by Carol Chi Ngang, 21-57. Leiden: Brill, 2025.

Joyce, Richard, James Martel, and Sundhya Pahuja. “International Law and the Challenge of Populism.” *Lond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2025): 129-134.

Karimaova, Tahmina.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London: Routledge, 2016.

Linarelli, John, Margot E. Salomon, and M. Sornarajah. *The Misery of International Law: Confrontations with Injustice in the Global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Morales, Patricia. “Huma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Reinforcement of Human Rights: The Declaration of Human Duties and Responsibilities(1998).” In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 Fundamental Debate*, edited by Stephan Parmentier, Hans Werdmolder and Michael Merrigan, 67-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ogge, Thomas, and Mitu Sengupta.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Drafted: Nice Idea, Poor Execution.”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24, no. 3 (2015):571-587.

Pribytkova, Elena. “Are There Global Obligations to Assist in the Realization of Socio-Economic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54 (2022): 379-484.

_____. “Global Oblig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rmoniz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www.kci.go.kr

of International Law 41 (2020): 1031-1136.

_____. “What Global Human Rights Obligations Do We Have?”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 no. 2 (2020): 384-449.

Salomon, Margot E. “How to Keep Promises: Making Sense of the Duty among Multiple States to Fulfil Socio-Economic Rights in the World.” *SHARES Research Paper* 53, 2014.

_____. “Deprivation, Causation and the La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lobal Justice, State Duties: The Extraterritorial Scop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Law*, edited by Langford et al., 259-2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Sengupta, Arjun.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24, no. 4 (2002):837-889.

Skogly, Sigrun. “Glob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 *The Routledge Handbook on Extrater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s*, edited by Mark Gibney et al., 25-39. London: Routledge, 2022.

Vandenhole, Wout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RC: Is There a Legal Obligation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7 (2009):23-63.

_____. “De-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thinking Human Rights Law and Poverty Alleviation.” *Law and Development Review* 11, no. 2 (2018):647-675.

_____. “Towards a Division of Labou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trater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Human Rights*, edited by Markus Kaltenborn, et al., 221-36. Cham: Springer, 2019.

Wolfrum, Rüdiger. “Article 56.”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2nd ed.*, edited by Bruno Simma et al., 941-94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_____. “Cooperation, International Law of.”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www.kci.go.kr

<국제규범 문서>

CESCR. *General Comment No.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2, Para. 1 of the Covenant).* E/1991/23, 14 December 1990.

_____.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icle 11 of the Covenant).* E/C.12/1999/5, 12 May 1999.

_____.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of the Covenant).* E/C.12/2000/4, 11 August 2000.

_____.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Covenant).* E/C.12/2002/11, 20 January 2003.

_____. *General Comment No. 25: Scienc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5 of the Covenant).* E/C.12/GC/25, 30 April 2020.

CRPD. *General Comment No. 2: Article 9 – Accessibility.* CRPD/C/GC/2, 11 April 2014.

_____. *General Comment No. 6: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CRPD/C/GC/6, 26 April 2018.

ETO Consortium. *Maastricht Principles on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8 September 2011.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OJL 2024/1760, 5 July 2024.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Part Two, 2001.

UN.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igned June 26, 1945, 1 U.N.T.S. XVI.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28 June 2024.

UNGA.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RES/41/128, 4 December 1986.

www.kci.go.kr

_____. *Implementation and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59/36, 16 April 2025.

_____.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5 September 2015.

UNHRC. *Climate Justice, Sustainability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60/95, 8 July 2025.

_____. *Draft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Right to Development: Report by the Chair-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Zamir Akram (Pakistan).* A/HRC/54/50, 18 July 2023.

_____. *Duty to Cooperate and Non-State Actors - Thematic study by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54/84, 5 July 2023.

_____.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Operationaliz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HRC/EMRTD/10/CRP.1, 16 April 2024.

_____.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HRC/17/31, 21 March 2011.

_____.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matic study by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57/40, 12 July 2024.

_____. *Inequality, social protection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Study by the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54/83, 4 July 2023.

_____. *Report of the high-level task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on its sixth session by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High-level task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15/WG.2/TF/2/Add.2, 14-22 January 2010.

_____. *Text of the Updated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with the Textual Proposals Submitted by States during the Ninth Session of*

www.kci.go.kr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A/HRC/55/59/Add.1, 13 February 2024.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Development.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20 July 2020.

_____. *Reinvigorat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 vision for the future.* A/HRC/54/27, 4 August 2023.

<웹사이트>

Delegations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EU Explanation of Vote – UN General Assembly 3rd Committee: Right to Development." 11 November 2024,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n-new-york/eu-explanation-vote-%E2%80%93-un-general-assembly-3rd-committee-right-development_en?s=63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Presidential Document, 90 FR 8619, January 30 20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30/2025-02091/reevaluating-and-realigning-united-states-foreign-aid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Gehring, Markus. "When Custom Binds All States: Reflections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ICJ Climate Advisory Opinion," Verfassungsblog, August 15, 2025, https://verfassungsblog.de/customary-law-icj-climate-advisory-opinion/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OECD, "International aid falls in 2024 for first time in six years, says OECD," 16 April 2025,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5/04/official-development-assistance-2024-figures.html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Tigre, Maria Antonia, Maxim Bönnemann, and Antoine De Spiegeleir. "The ICJ'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www.kci.go.kr

Columbia Climate Blog, July 24, 2025, https://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25/07/24/the-icjs-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an-introduction/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Explanation of Vote on a Third Committee Resolu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1 November 2024, https://usun.usmission.gov/explanation-of-vote-on-a-third-committee-resolution-on-the-right-to-development/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United Nation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 High-Level Political Forum 2025,” https://hlpf.un.org/2025/major-groups-and-other-stakeholders-mgos?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년 4월 24일).

World Bank, “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 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 https://pip.worldbank.org/home (검색일: 2026년 5월 10일).

www.kci.go.kr

<Abstract>

Reflections on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Eunju Jeong**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which marks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development is “an inalienable human right by which every human person and people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enjo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which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an be fully realized.” Historically, discussions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merged in earnest during the 1960s, driven by Third World states seeking to restructure the international order advancing claims against the Global North. Today, this right has acquired significance as a universal global right that extends beyond individual states in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Nevertheless, the declaratory natur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which remains in the form of 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ontinues to limit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

* This article is a revised and updated version of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entitled “A Study on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2025).

** Manager,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Civic Engagement, Kyung Hee University

www.kci.go.kr

This article argues that, given the natur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s a right to be realiz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ts implementation should be strengthened on the basis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owever,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has largely been implemented through state-centered cooperation and obligation of conducts, thereby limiting its capacity to address global structural inequalities. Furthermore, states in the Global North have remained reluctant to engag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while the recent rise of national interest-oriented diplomacy and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 cooperation have further constr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emerging discourse on the evolution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yond a state-centered framework toward a Global Obligation,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perspective seeks to promote a just international order and encourages collective responses to transboundary issues that threaten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climate crisis and global poverty. To operationalize this concept, several issues require further development. First, discussions on the subjects of global obligation need to expand beyond states to include private actors. Second, traditional notion of “causation” must not operate as a limiting factor on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ly,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global justice - as reflected in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 should be incorporated in an integrated manner. This will strengthen the links

www.kci.go.kr

among the pluralized international regime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trade, and enable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responses by global actors.

Keywords: Right to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Global Obligation

www.kci.go.kr